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2.

발 의 자 : 정점식 · 안철수 · 박충권
박덕흠 · 주호영 · 인요한
서천호 · 조지연 · 김정재
김태호 · 정희용 · 김도읍
김성원 · 구자근 · 신성범
김장겸 · 김미애 의원
(17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보호,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가정 내 폭력·학대·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·정신적 상처를 입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많으므로, 이들에 대하여 심리상담, 의료·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하여 보호·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이 많음.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, 자립정착금·자립수당, 자산형성·관리 등의 지원

이 필요하나, 이러한 자립지원은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였다가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음. 따라서 이러한 자립지원을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여부에 관계 없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.

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·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,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에 관한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,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하여 심리상담, 의료·심리치료 및 학업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6조제2항).

나.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, 자립정착금·자립수당, 자산형성·관리 등의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내 폭력·학대·가정해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전체로 확대함(안

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2조의3).

다.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·배포하고, 방송사업자에게 홍보영상을 방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6조의2 신설).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”를 “상담(심리상담을 포함한다), 보호, 자립지원, 의료·심리치료 지원, 학업 지원, 사후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5항까지”로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내 학대·폭력·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2.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3.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
4.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④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,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지원은 청소년복지시설 입소기간 및

퇴소 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 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2조의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(생 략)	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<u>상담, 보호, 자립 지원, 사후관리</u>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상담(심리상담을 포함한다), 보호, 자립지원, 의료·심리치료 지원, 학업 지원, 사후관리</u> -----.
<u><신 설></u>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내 학대·폭력·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 2.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.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.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<u><신 설></u>	④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의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대상,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자립지원은 청소년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퇴소 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⑥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⑦ -----
-----제1항부터
제5항까지-----

-----.

제16조의2(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

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

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
· 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.

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<삭 제>

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
및 자립수당 지급

3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
및 관리 지원
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
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
절차와 방법, 자립지원이 필요
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